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035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redacted]대학교치과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9,541,020원, 농어촌특별세 6,047,500원, 지방교육세 15,954,1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인 원고는 2018. 10. 1. 연구시설, 사무 공간, 부대시설, 진료시설 확충 등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redacted]구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가 [redacted]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6호에 따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100분의 75를 면제받았고, 이를 토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8. 현장조사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분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9. 위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취득세 감면분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하였다가 2019.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159,541,020원, 농어촌특별세 6,047,500원, 지방교육세 15,954,100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 병원과 인접하여 유기적 활용이 가능하고 도로를 마주하여 소통성이 좋았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인근에 매수할 만한 부동산이 별로 없었던 점, 원고는 공실이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즉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 임차인들에게 해당 목적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것이므로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하고 임차인들과 업무협의를 갖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의 목적사업은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1년이라는 시간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가) 이 사건 임대부분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상가건물로서 원고가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에 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순번	층수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차임(원)
1	7층	2018. 1. 1.~2019. 12. 31.	20,000,000	1,000,000
2	6층	2018. 1. 10.~2021. 1. 9.	70,000,000	3,200,000
3	5층	2018. 2. 8~2019. 2. 7.	60,000,000	1,900,000
4		2018. 2. 21.~2020. 2. 20.	20,000,000	1,500,000
5	4층	2018. 3. 21.~2020. 3. 20.	40,000,000	3,600,000
6	3층	2018. 6. 1.~2023. 5. 31.	50,000,000	3,200,000
7	1층	2018. 3. 1.~2020. 2. 28.	20,000,000	1,000,000
8		2017. 10. 16.~2022. 10. 15.	50,000,000	4,600,000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8. 10. 5. 이 사건 임대부분의 임차인들과 업무협의를 위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임대부분을 병원에서 사용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부분 중 현재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위 가)항 표 순번 1, 2, 3, 5, 7의 경우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었고, 순번 4의 경우 2020. 5. 31. 임대차가 종료되었다(순번 3의 경우 갱신 후 2021. 2. 8. 당사자간 협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계약내용에 따를 때 위 1)의 가)항 표 순번 3을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외하고는 모두 임대차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 넘게 남아 있었다. 또한 위 순번 3의 경우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전체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처럼 원고는 1년 내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하였다.

② 이후 원고가 실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임대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거나 갱신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취득 당시부터 존재하던 법령상 장애사유와 동일한 사유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하기 전 위와 같은 법령상 장애사유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사실만으로 위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공공보건업무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국립대병원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1년 넘게 고유업무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매월 합계 2,000만 원의 차임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대부분 외의 부분은 실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등 원고가 드는 사정은 이 사건 임대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와는 직접적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만한 근거도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